

# 2024년도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14.(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하병현(분과위원장 대행), 최진원,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90건(안전번호 제2024-13053호~1364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4-13053호~13070호(순번 1번~18번)는 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13071호~13642호(순번 19번~590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III.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4-1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986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 '♣♣♣♣'과 ♣♣♣♣ 카페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29건임. (순번 14번 심의대상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에서 문제집을 PDF 파일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18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1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18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번~59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95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2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전체 분량을 16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3. 6. 개봉하여 상영 중인 영화임.

(영화 '벙커 게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75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벙커 게임' 전체 분량을 49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3. 6. 개봉하였으며, 현재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에서 11,000원에 감상이 가능한 영화임.

(만화 '처음, 시작했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85번은 웹하드에서 만화 '처음, 시작했습니다'를 5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2. 23. 출간되었으며, 알라딘 등 사이트에서 3,500원에 판매중인 만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9번~59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13053호~13070호(순번 1번~1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13071호~13642호(순번 19번~59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21.

분과위원장 대행 하병현

위원 최진원

위원 한승원